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22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위성곤·이기헌·문진석

전용기 • 박지혜 • 염태영

강준현 • 이용선 • 임광현

박희승 • 박홍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은 국토·토지정책에 대한 정보 및 의견 등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인식과 의식을 형성함.

정책 의사결정자 또한 국토·토지정책에 대한 여론, 수용, 저항 등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언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2006년 이후 14년만에 실시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관하여 국민들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본 반면 언론 대부분은 국민들의 인식과 다른 방향의보도를 계속 생산함으로써 혼란이 많음.

이에 국가가 체계적인 국토·토지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국민, 언론, 정책결정자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국토·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 토·토지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이하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때 토지 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기와 상시조사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국토 · 토지 환경에 관한 사항
- 2. 국토·토지 여건 및 정책 변화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관한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의식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시기,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5조의3(국토・토지에 관한 국
	민의식조사)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국토·토지에 관한 국민
	의식 조사(이하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라 한다)를 3년
	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하여야 한다. 이 때 토지에 관
	한 국민의식조사는 다음 각 호
	를 포함하여 정기와 상시조사
	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토・토지 환경에 관한 사
	<u>항</u>
	2. 국토・토지 여건 및 정책 변
	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지에 관한 국민의
	<u>식조사에 관한 사항</u>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의식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
	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기관・법인・단체

- ·시설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과 시기, 내용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